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735KM203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745KM203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474KM20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746KM203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509KM20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464KM20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554KM20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579KM20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653KM203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-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466KM20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583KM20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6.04	1473KM20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LUXFER	2016.02	GF58343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5683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6757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7189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6017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622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5775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6197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5828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568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5681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566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6005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7185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6511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5.11	ALT84177155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LUXFER	2015.03	GF4937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LUXFER	2015.03	GF47974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4.01	0640KM111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LUXFER	2014.02	GF40691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3.06	0042KM079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3.06	0046KM079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3.06	0389KM080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3.06	0266KM080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3.06	0257KM080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3.06	0263KM080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3.06	0278KM080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3.06	0279KM080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3.06	0045KM079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INOCOM	2013.06	0032KM078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2.01	ALT84154748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LUXFER	2011.01	GF36039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1.01	ALT84151215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1.01	ALT84151287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1.01	ALT84151288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0.01	ALT84147891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0.01	ALT84148110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10.01	ALT84148131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천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09.09	ALT84146188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09.08	ALT84146755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09.02	ALT84144962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09.02	ALT84144928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09.02	ALT84143928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09.02	ALT84144013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09.02	ALT84143949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09.02	ALT84143934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분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09.01	ALT84141485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2

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용산소방서 (서빙고119안전센터)	SCI	2009.01	ALT84141215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	

붙임 3

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

□ 보유기준 (첨부자료 - 3 참조)

장비 종류	지급대상 및 기준수량		
	진압대원	준 진압대원	지원요원
면체, 방화복, 방화신발, 방화장갑, 방화두건	각 2점	각 1점	
등지계, 방화헬멧	각 1점	각 1점	
안전장갑, 안전헬멧	안전장갑 1점	각 1점	각 1점

□ 기준 대비 보유현황 (보관·예비품 포함)

장비 종류	기준수량	보유수량		부족수량	경과수량	보유율
		사용수량	예비수량			
공기호흡기	용기	24	36		36	
	등지계	28	0	8	1	
	면체	40	18		18	
	보조마스크	12	6		6	
방화복	40	40	21		21	
방화헬멧	28	28	3		3	
방화장갑	40	40	18		18	
방화두건	40	40	15		15	
방화신발	40	40	3		3	

□ 장비별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이 전 이진(인)
 ■ 확인자 : 이 문 성 이문성(인)

대상장비	점검항목	점검수량		불량 상세
		양호	불량	
① 공기호흡기 용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나사산 파손 및 부착물 훼손 등 기준압력(25Mpa) 유지 여부 	양호		
② 등지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깨끈, 허리벨트 등 이상 유무 점멸등 및 경보음 적정 여부 등 기능점검 - 탈출압력 도달 시 점멸등 적색, 경보음 작동 	양호		
③ 면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면렌즈, 머리끈 등 손상 유무 세트 결합 시 정상 작동 유무 냄새, 이물질 등 오염 유무 	양호		
④ 보조마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압버튼 및 세트 결합 시 정상작동 유무 정상 결합 여부 냄새, 이물질 등 오염 유무 보관주머니 유무 및 청결상태 	양호		
⑤ 방화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사테이프, 지퍼, 주머니 등의 손상 유무 냄새, 이물질 등 오염 유무 	양호		
⑥ 방화헬멧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체, 착장체, 충격흡수재 및 물받이, 턱끈, 보안렌즈 등 부착물 손상 유무 냄새, 이물질 등 오염 유무 	양호		
⑦ 방화장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피 및 안감의 찢김, 닳아짐 등 손상 유무 안감 분리 및 사용 시 방수 등 관리상태 냄새, 이물질 등 오염 유무 	양호		
⑧ 방화신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밑창·뒷굽 마모 및 당김고리 등 외관 손상 유무 사용 시 방수 등 관리상태 냄새, 이물질 등 오염 유무 	양호		
⑨ 방화두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·외부의 찢김, 봉제불량 등 손상 유무 안감 분리 및 사용 시 방수 등 관리상태 냄새, 이물질 등 오염 유무 	양호		
⑩ 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비관리시스템 입력정보의 적정 여부 	양호		

